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2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포하우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분야를 신설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설임대주택 분야 관련 규정 신설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기금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절차, 입주기간 규정 중 건설임대주택 분야 추가(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10조~제12조, 안 제15조)

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

- 위원회 정원 수정 및 구성 등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심의체계 개선

- 임시거소 지원 심의기구 변경 및 단서 조항 신설(안 제12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4. 9. ~ 4. 29.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5.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70%”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임대주택”이란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6호(중전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

제4조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을 “연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매입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임시거소”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를 “위촉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를 “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복지 등 업무 관련 부서장

3.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 구 소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매입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하여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입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매입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u>70%</u>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p> <p>3. “매입임대주택”이란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u>으로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p> <p><u><신 설></u></p> <p>4. (생 략)</p> <p>5. “마포하우징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70퍼센트</u> ----- ----- -----.</p> <p>3. -----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u> ----- -----.</p> <p>4. <u>“건설임대주택”이란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u></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u>---</p>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4. (생략)
5. 마포하우징사업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
6.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신설>

4.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연장-----
-----.

제5조(기금의 조성) -----
-----.

1. · 2. (현행과 같음)
3. 구의 -----

4. (현행과 같음)
5. -----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임시거소 -----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
-----.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보장과장, 주택과장

2. (생략)

<신설>

3.·4. (생략)

④ ~ ⑥ (생략)

제10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
상) ① (생략)

② 주거안정자금 용자 및 지원
대상은 용자 및 지원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
주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
득 주거취약가구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

각 ----- 10명 -----
-----.

③ ----- 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하며-----
----- 위촉 위
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
----- 되어야 한다.

1. 주택·복지 등 업무 관련 부
서장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하려는 구 소

재의 -----

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할 의지가 있는 가구로 한다.

1.·2. (생략)

③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입주수요에 따라 제3항 이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절차) ①·② (생략)

③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임시거소 입주신청 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

1.·2. (현행과 같음)

③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④ -----
-----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제11조(신청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제12조(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
----- 대하여 위원회-----

-----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없

② 구청장은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용자 및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② (생략)

③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이 있으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⑥ (생략)

이 결정할 수 있다.

② -----

- 위원회-----

-----.

③ -----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제15조(입주기간 및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마포하우징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 주택 건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기금 100%)

나.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관련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건립」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21. 1. ~ 2025.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기금	2,000	2,100	-	-	-	4,100
	소계(a)	2,000	2,100	-	-	-	4,100
세출	기금	1,295	1,295	1,295	108	107	4,100
	소계(b)	1,295	1,295	1,295	108	107	4,100
□ 총 비용(a-b)		705	805	-1,295	-108	-107	0

4. 재원조달 방안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입·세출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김주형(☎8812)